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도입과 공제 조합 운영계획

내년 1월부터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와 협회의 향후 운영계획을 살펴본다

1.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란?

●2003년 1월부터 시행: 정부는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2년 2월 4일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재질, 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포장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과 포장재에 대하여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제품 또는 포장재 폐기물을 재활용토록하고 있다.

●책임의 공유: 사용후 제품 및 포장재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의 공동 책임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배출자는 깨끗한 분리배출을, 지자체는 분리수거 및 선별을, 그리고 생산자는 전량 재활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와 제품으로 구분된다. 포장재는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가전제품 등 최종 소비제품의 포장재로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용기류, 트레이, 필름류, 시트형 등을 포함한다. 제품은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형광등이 포함되었다.

●재활용의무 대상사업자: 포장재인 경우에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내용물의 제조업자, 출하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원칙으로 하되, 의무자가 농어민 등 다수인 경우에는 포장재 제조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재활용 의무를 진다.(표 참조)

●생산자의 의무 재활용량의 산정: 재활용의무량은 제품 등의 출고량, 재활용량, 재활용 여건계수(분리수거량, 수출입량, 재활용가능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재고량, 기술개발상황, 내구년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사업자별 재활용 의무량은 총출고량 중 사업자의 출고량 비율 x 재활용 의무총량으로 한다

○재활용의무총량 = 기준년도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량 + (기준년도 제품, 포장재의 출고량 - 기준년도의 제품, 포장재의 재활용량) × 0.1 × 재활용 여건계수(기준계수는 1)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이행방법: 생산자는 직접 회수·재활용하는 방법,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재활용지정사업자 등에 위탁 재활용하는 방법, 또는 품목별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중 택일할 수 있다.

업종	재활용 의무생산자	규모
음식료품류, 의약품류	EPS, PSP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연간매출 10억원, 또는 수입액 3억원 이상 사업자
농수축산물	EPS, PSP 포장재를 이용한 농수축산물(상표 부착 제품) 출하 및 수입, 판매업자	
도시락용기, 밭침접시	PSP 포장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가전완충재를 사용한 전자제품	발포합성수지(EPS, EPP, EPE)를 완충 포장재로 한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농수축산물 상자	EPS 포장상자 제조업자	

● **재활용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사업자가 재활용 목표량을 달성치 못한 경우에는 품목별 재활용비용의 1.3배인 재활용부과금 부과한다.

○ 품목별 재활용비용(기준단가, kg 당): 종이팩 185원, 철캔 108원, 알루미늄캔 89원, 유리병 34원, 페트 용기 178원, 일반플라스틱 및 PSP 327원, EPS 317원, 복합플라스틱 포장재 467원

2. 스티로폼 재활용 사업공제조합 운영계획

● **당협회와 재활용의무사업자가 연대하여 공제조합 설립:** 당협회는 그간 스티로폼 원료 제조 및 포장재 가공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가전제조업체와 대형유통업체 그리고 재활용업체와 협력하여 스티로폼 재활용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따라서 현체제를 기반으로 신규 재활용 의무자인 EPS 포장재 제조업체, 컵라면 제조업체, PSP 식품포장용기 제조업체 등과 연대하여 재활용공제조합을 인가 받아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계획이다.

●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 위탁:** 스티로폼 재생원료의 종류는 재생수자용 잉고트(일관 작업시 펠릿 포함), 섬유코팅제, 경량콘크리트풀 제품 등으로 하되, 아직 회수재활용체제가 미흡한 PSP 포장재는 당분간 고형연료방법도 재활용목표량의 50% 이내에서 인정될 예정이다. 위탁 재활용자는 스티로폼 감용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 대형유통점 그리고 위 재생원료 생산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재활용자의 시설 능력 및 재생원료 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을 맺고 연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적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재활용 신기술 및 재생재료의 수요 확대 협력:** 재활용비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및 최종재활용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감용기술의 개발 보급과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며, 재활용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 **홍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스티로폼의 올바른 이해와 재활용 홍보 등 기본적인 사업은 스티로폼 원료업체의 협조를 받아 비수익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비자단체, 환경단체와 연대한 스티로폼 분리수거 홍보, 재활용제품의 수요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재활용기술 정보의 보급 등이 있다.